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유미특허법인
대한민국 061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15

발송일 (일/월/년) 2020년 03월 16일 (16.03.2020)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OPP193293KR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9/016776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9년 11월 29일 (29.11.2019)

우선일 (일/월/년)
2018년 11월 30일 (30.11.2018)

국제특허분류(IPC)
C07D 405/14(2006.01)i, C07D 409/14(2006.01)i, H01L 51/00(2006.01)i, H01L 51/50(2006.01)i

출원인
주식회사 엘지화학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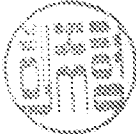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20년 03월 16일 (16.03.2020)

심사관
허주형
전화번호 +82-42-481-8150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b)).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1-1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10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10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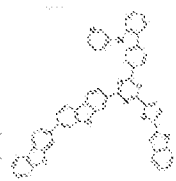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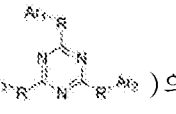
D1: CN 108191842 A (VALIANT CO., LTD.) 2018.06.22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1. 청구항 1-10

D1은 양극, 음극, 상기 양극과 음극 사이에 화합물 TM-16()을 포함하는 유기물층을 포함하는 유기 발광 소자를 기재하고 있으며(청구항 6, 9, 10; 단락 [0044]; 도면 1), 상기 화합물 TM-16은 본원 화학식 2의 X1-X3: N; Y: O; Ar1: 헤테로아릴기로 치환된 카바졸일; n1, n2: 0인 화합물 및 청구항 7의 화학식 1-1로 표시되는 화합물과 유사합니다.

청구항 1, 2, 4, 6, 7, 9는 Ar2로 티오펜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D1과 차이가

있지만, D1에 화학식 1()의 Ar2로 다이벤조티오펜기를 선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고려할 때(청구항 1, 3), 상기 차이점은 통상의 기술자가 자명하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3, 5는 통상의 기술자가 적절히 치환기의 종류 및 위치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청구항 10은 통상의 기술자라면 적절하게 선택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10은 D1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1. 특이 공개문헌 (PCT규칙 43의2.1 및 70.10)

	출원번호 특허번호	공개일 (일/월/년)	출원일 (일/월/년)	우선일(유효한 우선권주장) (일/월/년)
P,X	KR10-2017-0181463	05/07/2019	27/12/2017	없음

특허출원 KR10-2017-0181463 (공개특허 KR 10-2019-0079340 A)은 PCT 규칙 64.3의 관점에서 선행기술을 구성하지 아니하지만, 청구항 1-10의 모든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비서면에 의한 개시 (PCT규칙 43의2.1 및 70.9)

비서면에 의한 개시의 종류	비서면에 의한 개시일 (일/월/년)	비서면에 의한 개시를 언급하고 있는 서면의 개시일 (일/월/년)
_____	_____	_____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II.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1-10은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